

수 있다. 첫째, 인권존중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는 물론 성인이 되었을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율적 존재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인간으로서 존재적 자부심을 갖으면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이 근간이 된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은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각자가 아름다운 존재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작은 상처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무엇인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생명력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이 이들의 생명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인권존중은 학생을 행복하게 해 준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는데서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존중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셋째, 인권존중은 학교공동체를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된다는 것은 교원, 학부모, 행정관료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인권 존중 수준이 높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공동체를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2. 학생의 인권수준은 제도로서 법제화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보호가 제도로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본 논문이나 조례(안)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 수준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자율결정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을 부모나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sup>24)</sup>, 학생의 자율능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도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 수준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권리와 학생으로서 부여된 자격으로서 고유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고,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을 보호적 차원에서 만약 인권을 제한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호를 위한 제한이 타당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은 소관부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부처 소관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인적 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경우 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교육의 기본법 역시 학생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sup>25)</sup>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조례(안)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논의자체가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한국문화를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24)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청소년 보호론과 청소년 해방론, 청소년 자율적 조정론이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론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청소년을 부모의 학대나 혹사, 등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청소년 해방론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청소년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청소년 자율적 조정론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5) 하승수, “아동(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3. 학생들의 인권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인권능력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인권능력은 개인의 권리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권리의식이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세계로부터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는 자세는 물론 개인이 타자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가의 문제이다. 인권능력은 인간의 정체성의 개념을 다중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나는 가정, 이웃, 사회를 넘어 세계를 향한 존재이고, 각 영역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인권능력은 인권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권능력은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권능력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능력은 자신의 존재를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삶의 영역이 세계가 지구촌의 영향권에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 적용되는 도덕의 개념을 확장하여 세계를 포괄하는 윤리가 필요하다. 인권은 나를 인류 속의 관계적 존재로 파악하고 인류를 위해 실천하게 된다.

학생들이 인권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제도적인 노력이 성숙하게 꽂힐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권을 삶의 성숙의 차원에서 향유할 수 없게 한다.

학생들의 인권성숙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교과시간, 교과 외 시간, 그 외 활동들을 인권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 단위 학교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4.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상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은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관료,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친 주체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상황은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질을 인권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가정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도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도 물론 인권상황도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노력할 때 학교문화가 성숙해질 것이다<sup>26)</sup>.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도 인권교육의 주체가 됨을 물론 가정, 학교,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센터로서 기능을 하여 한국사회 문화 자체가 인권의식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대중매체가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 제작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5. 성숙한 인권문화 프로그램을 한국사회 전체의 기본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한국사회의 삶의 질과 비례한다. 한국사회 전체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

26)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사의 인권의식의 조사' 그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빈약한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확한 인권 개념이 형성되지 못한 교사들에 의해 체계적이지 못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인권지식 조차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교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인권지식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자기연찬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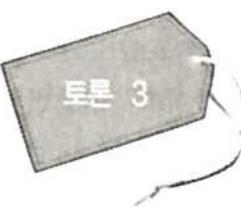
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기본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가령 '미디어 바로 보기 운동'을 한다면, '미디어 바로 보기'와 '인권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편성하여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국민의 기본교육으로 상정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 II. 나오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든 교육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이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인 내가 주체적이면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인정하면서 산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모든 교육의 출발이고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학생의 인권보호·존중을 위한 법제화는 학교문화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함께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주체인 가정, 학교, 사회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전정한 만남을 통해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논의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먼, 우리의 인권

최아름 (사직여자고등학교 2학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제목은 이제 하나의 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이 말은 슬프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나도 매일을 '당연하게 인권이 상실된 학교라는 공간'과 부딪힌다. 우리는 교문에 들어서기 전부터 몇 번이나 복장은 규정에 맞는지, 명찰은 달았는지 하는 자기검열을 실시한다. 학생의 선택권과 발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학교는 단순히 지시를 내릴 뿐이고 학생은 그것에 순응해야만 한다. 쉽사리 접할 수 있는 뉴스에서 학교는 복장제한, 두발검사, 체벌로 얼룩진 공간이다. 이렇듯 학교 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를 고쳐보고자 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와 같이 이번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현 시대의 한 명의 학생으로 상당히 반기는 바이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많다. 나의 고민과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드는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이것이 지금의 불합리한 학교 교칙 및 규정에 대한 제재·시행에 대한 강제성을 가져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도 많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필요한 제재나 시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용의 부분에서 좀 더 보충되어야 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제 하나하나의 조항에서 들었던 의문과 건의 할 내용을 풀어내 보겠다.

## [제 2장 교육받을 권리]

현재 학생은 학교에서 일방적인 교육을 '당한다.' 교과 편성에 있어서 학생의 거의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야간 '자율' 학습조차 대부분이 강제로 시행된다.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 학습과 정규 시간 외 보충 수업을 전면적으로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지금도 물론 희망조사서라는 것이 있지만 담임이 일방적으로 동의 할 것을 강요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 2장 6조 선택의 권리에서 '학생은 보충 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수업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 문제는 당장 시행 가능한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확실하게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자

율화하라는 강제적 성격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외에 정규 수업에 대해서도 제 6조 선택의 권리에 나와 있는 선택과목의 실질적 선택권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과목별로 학생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 또한 교과 선택에 관한 협의 과정과 과목선택 설문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 [제 3장 자치에 관한 권리]

학생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가 조직조차 되지 않은 학교도 있으며 설사 만들어져 있더라도 주어진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움직임이 중요한 만큼 학생 자치에 대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제 3장 9조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중 ②번 내용에서 학교 운영비의 2% 이상을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지원과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감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 10조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얼버무려 놓은 것이 아쉽다. 출마자에 대해 실제 그 학생이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지도력이나 자질과는 별개인 '성적'을 커트라인 삼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 10조에 '학생회 임원 구성 시 성적 기록 필요를 삭제한다.'라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할 것 같다. 제 11조 동아리 조직 및 계발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나 지역 사회의 동아리를 연계해 전체적 연합을 만들어 실질적 활동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타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충되어야 하겠다. 그간 학교의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되는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생은 철저히 배제 되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 12조 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중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의 내용을 확장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여러 학교의 교칙에는 학생대표는 교장의 행정적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를 수정해 학운위에서의 단순히 발언 기회만 보장해서는 모자란다. 나아가 학생에 관련된 부분일 때 학생 대표가 의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조항에 추가되어야만 진정한 학생 의견 수렴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 본다.

### [제 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학교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 학생회 주도로 '성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 '인권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한 달의 한번과 같이 기간을 정해 강제적으로 실시할 것이 제 14조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다. 제 15조 학예 제에 대한 내용 역시 학교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학생회가 요구하는 만큼 지원해주고 그 사용 내역을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제 17조 복지 및 편의 시설에서는 실내 휴게시설, 정수기, 개인 사물함 이외에 특별히 여학교에 필요한 생리 물품 구비를 6번으로 하여 추가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생리는 학생들의 인권과 모성보호의 관점에서도 꼭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대, 짐질기, 온수기 등 여학생의 생리와 관련된 물품도 추가되어야 한다. 제 18조 학생의 날 행사 역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시수의 문제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으나 강제적으로라도 학생회 주도의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 [제 5장 신체와 노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학생이 부당한 체벌을 당하였을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신고 기구가 절실히다. (제 19조) 교사의 부당한 잔심부름을 거부하여도 직, 간접적 피해를 받지 않는 학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교사실, 교사용 화장실, 교사용 휴게실의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노동력 착취임을 아는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0조) 또 제 5장에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지만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청소년 노동, 즉 단기간 청소년 노동 (이하 아르바이트)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구제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6장 사생활을 누릴 권리]

학생의 사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제 23조와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는 내용을 환영한다. 학교에서는 교칙 준수의 이유로 책상

위에 가방의 내용물을 모두 내어놓거나 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생활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 인간에 대한 인격 모독임을 알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제 7장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교칙을 살펴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가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제 26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 있어 학교 명예 훼손과 관련된 교칙 조항을 수정하고 처벌받았을 경우 학생을 구제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 27조 학내 언론에 대해서 교지, 신문 등의 ‘정기적’ 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제 28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완전 익명제로 하며, 지금까지 실명제를 사용해 온 학교 홈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강요한다. 이제 제 30조 교외 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부분의 교칙에 ‘교장의 승인 없이 사회·정치단체에 가입’을 금지한다. 교칙에 따르면 회장직에 출마할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한 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 ‘교장의 허락 없이 정치성을 띤 집회에 직접 참가한 자’ ‘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외의 행사에 출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심지어 퇴학 처분까지 내리게 되어있다. 18세 선거권이 나오고 20대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철저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민주화가 더욱더 발전되고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학생의 정치·사회 참여의 내용을 제 30조 한 문장으로 끝내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명백화 시켜서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 8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학교 정계 위원회 소집 시 학생 대표를 변호인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제 31조 적법절차의 권리) 현재 학교의 교칙에는 부당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다. ‘교사의 타당한 지도에 불응한 자’,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반대한 자’와 같이 일방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도 있으며 ‘교풍을 문란

케 하는 출판물을 탐독하거나 낭독한 행위’ ‘상급생의 바른 지도를 거부한 자’ ‘이성과 교제하여 학풍을 문란케 한 자’와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어이없는 조항도 많다. 이러한 조항을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면 삭제·수정해야 한다. 또한 머리 길이 설정, 양말 색깔 설정, 심지어 속옷의 색깔까지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서도 전면적 삭제와 수정이 필요하다. (제 32조 학칙 및 제 규정) 또한 학교 교칙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교사가 임의로 행하는 변칙적인 처벌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교칙 전반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와 같이 인격 모독적인 내용은 없애는 것이 옳다.

학생의 눈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몇 가지 꼽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에게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안을 보여 줬을 때도 대부분 ‘이렇게만 지켜져도 진짜 좋겠다.’라는 반응들이었다. 얼마나 완벽한 조항을 만드느냐 보다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학교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 역시 이번 ‘부산광역시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조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머리를 맞대어 부실해 보이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확실한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때다. 조례의 완성, 선언과 함께 제발 학교 다니기가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토론 4

## 부산광역시 학생 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

이 금 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 1. 시작하며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웬지 투쟁을 해야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과연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최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그 사례를 살펴보자.

"대연동의 모 고등학교에서 단체 모임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단체로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자 교감선생님의 답변 말씀이 담당 선생님이 매로 때리려는 것을 교감 선생님께서 제지하여 체벌은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꼭 매로 때리는 것만이 체벌이고 인격모독 일까?

"기장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너무 말이 많고 산만하여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에 청 테이프를 바르는 일도 있었다."

이보다 훨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2. 의견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때 부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박영관 선생님께서 발제 하신 내용을 기쁜 마음으로 잘 보았다.

여기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몇 가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제2장: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학습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교사의 상당수가 학교 교육 목표를 상급학교 진학에 두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6조 2항에 있는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 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은,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슴에 바로 와 닿는 부분이다.

"어떤 아이가 테니스 부가 너무 하고 싶어도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할 수 없이 가위, 바위, 보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가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양질이라고 하면 흔히 실력 있는 교사(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를 떠올리게 되지만 꼭 그것만이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제의 점수가 높은 사람? 양질의 기준을 정하는 이 부분은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명목상으로 학생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사 운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아이들의 가산점을 높여주는 창구로써의 기능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다.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자치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 제정을 통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12조 2항에 있는 내용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 활동과 교복, 앤범, 체육복 등 학생 용품을 내용과 선정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인 것 같다.

## 제5장: 신체와 노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제19조 체벌 받지 않을 권리

지금 현재 초, 중, 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법안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었고, 일반 교사들도 아무런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준의 법 규정과 관행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 소원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발제문에는 신체에 관한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언어폭력에 관한 부분도 침가되었으면 한다. 신체적 고통도 많은 후유증을 야기시키지만 언어폭력은 아예 마음을 때리는 아주 잔인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체벌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타격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다.

## 제6장: 생활을 누릴 권리

우리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 아이가 한 선생님에게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리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문제아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아의 기준은 다 똑같기 때문일까?

공개된 장소 (교무실)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거나, 아이의 문제점을 선생님들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 제9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제37조, 제38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학생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서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곳이 학교이고, 선생님인데 거꾸로 선생님에게서 많은 인권 침해를 받는 것을 본다면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선생님들 또는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좀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은 아닐까?

남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인권도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부모가 되기 이전에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었더라면 더 좋은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비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꼭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마치며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골치 거리는 아이들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앞두고 있더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유해 사이트 때문에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부모들이 유해한 사이트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끊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식구들이 찾아야 할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 흐름에 뒤떨어져, 아이들이 살아야 할 21세기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집에서는 부모의 온갖 노력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집밖에 나서는 순간 그런 환경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필요악인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 시켜야 할까? 부모 기성세대들이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아이들의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타인이나 다른 힘에 의해 무서워서 굴복하는 아이 보다는 학교나 사회에서 인권 보장을 받으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료

## 부산 지역 학생인권 의식 조사 및 학생 생활규정 실태조사 분석

자료 1.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관계규정(학생회칙·선도 규정·용의복장규정) 실태조사 분석

자료 2. 부산지역 학생 인권 의식  
(학생·학부모·교사) 조사 분석

전교조 부산지부 교육정책연구소(준)

## 자료 1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관계규정(학생회칙·선도규정·용의복장규정)

### 실태조사 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육정책연구소(준)

#### 1. 분석의 목적과 대상<sup>27)</sup>

이 분석 작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자료가 있어서 밝히고자 한다. 2001년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펴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는 자료가 그것이다. 우리 자치특위 팀이 이 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분석의 틀을 준 것이 바로 이 자료이고, 분석 할 때도 이 자료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하였다. 어려운 작업을 감내하신 위의 단체들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의 원용을 기꺼이 허락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분석 작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자료가 있어서 밝히고자 한다. 2001년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펴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는 자료가 그것이다. 우리 자치특위 팀이 이 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분석의 틀을 준 것이 바로 이 자료이고, 분석 할 때도 이 자료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하였다. 어려운 작업을 감내하신 위의 단체들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의 원용을 기꺼이 허락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7) 이 분석 작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자료가 있어서 밝히고자 한다. 2001년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펴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는 자료가 그것이다. 우리 자치특위 팀이 이 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분석의 틀을 준 것이 바로 이 자료이고, 분석 할 때도 이 자료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하였다. 어려운 작업을 감내하신 위의 단체들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의 원용을 기꺼이 허락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영혼 하나 하나가 천부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아이들이 지각한다고 꾸중하는 순간에도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분석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져 성스러운 외침이, 그저 한낱 공허한 외침으로 넘나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무시당하는 우리 학교 현실과의 간극 차를 확인해 보려는 갈증에서 비롯되었다. 아니 어쩌면,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한 영혼을 폐폐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학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지배하는 규율에 대해 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실제로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학교에서는 명시적 규율보다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지도와 지시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지도와 지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고, 명시적이며, 일정 정도 통일성을 갖춘 학생생활관계규정을 통해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학생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학교(27개교) : 동래교육청 7개교, 동부교육청 4개교, 해운대교육청 4개교, 서부교육청 4개교, 북부교육청 4개교, 남부교육청 4개교

고등학교(25개교) : 사립 일반계 9개교, 공립 일반계 10개교, 실업계 6개교

## 2. 학생회칙 분석

### 1) 학생 대표의 출마 자격

학생회칙이 확보된 25개 중학교 가운데, <표 1-1>과 같이 학생 대표의 출마 조건은 (1) '품행 단정' 25개 학교 (2) '성적 제한' 18개 학교 (3) '징계'에 따른 출마 제한이 18개 학교이다. 25개 학교 중 '품행 단정' 이외에는 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는 3개 학교다.

<표 1-1> 학생 대표의 출마 조건 (복수 처리)

조 건		학교수
(1) 품행 단정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25
(2) 성적 제한	학업성적이 몇 %(혹은 등수) 이내이고 행동발달 상황이 우수한 학생	18
(3) 징 계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학생대표 출마에 제한을 하는 경우	18
(4) 제한 없음	'품행 단정'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음	3

(1) '품행 단정'의 경우 어른들의 가치 기준이 반영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생에게는 품행 단정히 대표 선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조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대표를 선출할 때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출기준을 '품행 단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 '성적(成績) 제한' 조건은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할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차

별 요소이다.

학생 대표는 다수의 학생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선택받은 학생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학생 대표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능력'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성적 우수'가 대표로서 발휘해야 하는 다른 자질의 뛰어남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 관계에서 지도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자질 중에서 성적만을 유의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자질 중에서 성적만을 유의 미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3) '징계'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선도처 분)'의 5단계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 또는 언행이 불 속한 경우 많은 학교에서는 훈계 혹은 교내봉사의 징계를 내린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의 훈계 한 번 받지 않은 학생은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제한을 한다'는 규정은 그야말로 티끌만한 오점도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지켜질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징계사실에 따른 출마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출마를 제한한다'는 방식으로 징계의 수위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의 징계가 어느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령 1학년 때 징계 받은 사실이 있으면 3학년 때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한 번 징계는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인지는 교칙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징계 받은 사실로 인해 그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에 계속적인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면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징계 사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전체 25개 학교 중 한 학교도 없다. 사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둘 수가 있다.

'징계 3개월이 경과 후 뚜렷한 개전의 정이 있고, 선행 및 모범 사실이 있을 때에 선도 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로 인하여 재학 중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일체를 무효로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 내용을 사면 조치한다'

결론적으로 상당수 학생회 회칙에서 두고 있는 학생 대표 출마 조건인 (1) 품행 단정, (2) 성적 우수, (3) 징계에 의한 제한 등은 불필요한 요소들로서, '본교 재학생'이란 규정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2) 학생회 기능과 권한

어떤 조직이 그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이 있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③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인준과 불신임, ⑤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소집 등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표 1-2>과 <표 1-3>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6개 항의 학생회의 권한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①항과 ②항에 대한 결정과 집행 권한을 조사한 것이다. 말한다. 학생회가 이 두 개 항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는 5개 학교에 불과하다.

<표 1-2> 학생회칙 개정의 주체

개정의 주체	학교수
(1) '학생회 기구'(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회)	7
(2) '학교 당국'(학교장, 지도위원회, 지도 교사)	4
(3) 회칙에 명시되지 않음	14

<표 1-3> 학생회 예산과 결산의 편성 주체

편성의 주체	학교수
(1) '학생회에 부여한다'	8
(2) 학생회에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음	15

<표 1-2>에서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은 학생회의 지도위원회가 가지는 기능으로 볼 때, '학교 당국'이 개정의 주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다. 학생들이 주체이며,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는 학생회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학생회칙의 개정에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핵심적 주체인 학생회를 의결기관도 집행기관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는 지도위원회를 통해 '모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지도의 방식이다. 교칙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제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학교 당국이 가진 권한은 학생회의 자치권을 고려 또는 존중하지 않는 과도함을 띠고 있다. 이는 학생회에 대한 '장악'이나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지 '승인' 또는 '재가'에 얹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의 방향일 수는 없다.

### 3) 마무리

대다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직선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끌어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자치활동을 억압당한 학생들이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가진 사람,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9조)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제 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은 청소년의 참여를 복돋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가진 교육에 대한 권리와 완전한 범주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삶의 기술(life skill)'을 제공받는 것이다. 교육은 청소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신의 인격과 재능,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 속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해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학생회를 통한 활동은 권리의 실재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권장되고 증진돼야 한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전면적인 배제는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재고돼야 할 것이다.

## 3. 용의복장 규정

### 1) 두발

두발 및 용의 복장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 \* 규제 없음 :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 학교
- \* 조건부 허용 : 대체로 자유롭되, 특정 사항을 예외로 지정하여 금지하는 학교
- \* 규제 : 용의복장 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기타 : 용의 복장 규정만으로 규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 2-1> 두발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조건부 허용인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학교수	0	4	47	0

'조건부 허용'의 경우 길이는 자유이다. 단,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묶어야 하고 파마, 염색, 스프레이 등 머리모양에 변형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에서 머리 모양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이나 상고머리'로 여학생의 경우 '단발, 커트, 한 갈래로 묶는 머리'로 제한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두 머리형 중하나를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세 형태를 다 지정하고 학생이 그 중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세 형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형태를 지정했으면 다른 형태의 머리는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길이는 남학생의 경우 옆머리는 귀를 덮지 말아야 하며,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일반적이며, 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학교도 있다. 여학생의 경우 귀밑 6cm에서 20cm(어깨선정도)의 범위에서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규제가 부가되고 있다. <표 2-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표 2-2> 머리 모양 규제의 예

- ▲ 모자는 어떤 형태이든 쓰고 등교 할 수 없다.
- ▲ 여학생 금지 머리 모양 : 전체적으로 층을 낸 머리, 묶지 않고 길게 풀 머리, 올린 머리, 꼬불쳐서 둘은 머리, 어른스타일의 머리, 쪽진 듯 위로 묶은 머리, 커다란 편으로 틀어 올린 머리
- ▲ 남학생 금지 머리 모양 : 삭발, 구례나릇, 파마, 평크 머리나 혐오감을 주는 머리(대머리, 옆머리를 수직으로 세우는 등)는 안 된다.

머리 모양 규제의 내용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규제 대상인 머리 모양이 학생의 인격 발전이나 학습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와 유추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고 하자. '모자는 왜 안 된다는 것일까? 옛날 영화에 보면 학생모를 쓰는 것이 학생을 표시하는 증표이던데 지금은 왜 안 될까? 더운 날 햇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학생다움을 해치는 것일까? 머리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모자를 쓰는 것도 안 되는 일일까?', '짧은 머리가 공부하는 데 좋다면서 삭발은 왜 안 된다는 것일까? 외모에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겠다는 뜻으로 삭발하면 안 되나? 뭔가 심난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면 안 되는가? 부당한 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는 건 왜 안 되는가?'

위 규정들은 이런 질문에 전혀 답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제쳐놓더라도 규정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설득력은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율에 명시되는 단어들은 그 뜻이 분명한 것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어도 이해를 도울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꼬불쳐서 둘은 머리', '말총머리', '버섯머리', '하이칼라형' 등이 어떤 형태의 머리 모양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정한 머리 길이와 모양이 획일적이며 일체의 변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 대상을 나열하는 것은 규제의 과잉으로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의적이다. 까다롭고 자의적인 규정은 구성원의 동의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기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규범으로서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의 개성 표현도 보장받지 못하는 속에서 강요받는 단정함이 과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의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머리 모양을 포함한 학생의 몸을 고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 2) 장신구

장신구에 대한 규정은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와 머리핀에 대한 규정이다. 규제가 없는 학교는 2개이며 143개 학교가 규제가 있는 학교에 속한다. 머리핀의 경우 색깔은 검정색 계통(밤색, 갈색, 진한 색)으로 제한되며, 굽기와 크기에도 제한이 있다.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일체의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표 2-3> 장신구의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학교수	8	43	

<표 2-4> 장신구 규제의 예

- 여학생의 머리핀(띠)은 검정색 밤색 등 화려하지 않은 색으로 규정.
- 머리핀(띠)의 굽기나 크기가 지나치게 크지 않는 것, 큐빅핀 제한.
-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목주용 반지 등 액세서리 일체금지.
- 헤어밴드 사용 금지, 편은 검은색 잠금용만 사용, 색깔 있는 장식용 편은 사용금지.
- 머리에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색, 밤색, 그리고 감색 머리핀은 사용할 수 있다.(단, 형태가 이상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귀를 뚫어서는 안 된다.
- 칼라가 들어간 안경과 렌즈는 불허한다.

머리핀, 머리띠, 기타 액세서리는 사람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필수 품일 수도 있고 치장용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호는 존중돼야 한다. 머리핀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길이와 굽기의 cm까지 지정하고 있다. 색깔은 물론 크기와 굽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표 2-4>의 규제에 따르면 학교 당국이 원하는 머리핀은 7~80년대로 돌아가야 살수 있는 물건들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아예 제작까지 해서 배포하지 않고서야 소비자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시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 원하는 물건을 장만하긴 어려울 듯 싶다. 학교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굵은 편이나 큐빅편이 학생다움을 어떤 식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나치게 크지 않는 것', '형태가 이상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규범으로 지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액세서리는 경우에 따라 학생 자신의 종교에 따른 상징물이나 가족의 의미 있는 소장품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소품을 갖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일체 금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개성과 기호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 3) 신발

신발에 대한 규정은 색상, 형태, 크기에 대한 규정이다. 전체학교의 77%인 161개 학교가 신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표 2-5> 신발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학교수	4	46	1

고가 및 사치스러운 신발과 원색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두의 경우 검은색 계통으로, 운동화의 경우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제한된다. 형태에 대해서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 앞굽이 나오거나 긴 신발 등 단지 유행을 따른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란 모호한 표현을 두고 있다. 구두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체육시간 이외에는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표 2-6> 규제의 내용 (복수처리)

	가격	색상	형태
학교 수	7	27	46

<표 2-7> 신발 규제의 예

- 학생신분이 손상되지 않으며 무늬와 장식이 없는 보편적인 검정색 단화.
-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을 착용하되, 다음을 규제한다. 부츠,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군화, 고무신 등
- 학생용으로 검은색 단화(굽 높이 5cm 이하) 또는 흰색, 검은색, 감색(곤색의 운동화)
- 금지사항 - 굽이 높거나 통굽 구두, 유행에 따라 변형된 것, 색깔이 있는 것, 광택이 있는 것, 발에 맞지 않게 큰 것
- 신발은 목이 짧은(복사뼈 이하)흰색 운동화를 신는다. 목이 긴 운동화나 굽이 높은 신발, 방한화, 농구화, 색상이 현란한 패션운동화, 특수화 슬리퍼 등의 착용은 금한다.

일상 생활의 필수품인 신발에 대한 규제 또한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세하다. 문제는 이 세세함이 엄격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과정의 산물인가, 간섭과 통제에 치중한 결과인가이다.

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표 2-7>의 규제 내용을 살펴볼 때 '단정하지 못한', '흉한', '유행에 민감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들이 '학생 신분에 맞는'이란 전제 하에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나온 규제는 '신발 앞 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너무 길거나 너무 둥근 것'이란 식의 규정답지 못한 규정이다. 이런 식의 규제로 간섭을 하려들면 끝도 없을 열거가 계속될 것이다. 신발 앞 축의 유행이 바뀔 때마다 학교 당국은 이런 방식의 규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엄정함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간섭과 통제를 시도하려 들 때 이런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두만 허용되는 경우, 운동화만 허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듯 구두와 운동화를 기준으로 학생다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문제는 학교 당국이 그런 기준들을 학생다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 또한 학교 당국이 독점한다는 데 있다.

### 4) 가방

가방에 대한 규정은 주로 형태, 가격 및 사치성, 색깔 등에 관한 내용이다.

<표 2-8> 가방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학교 수	16	35	0
	가격	색상	형태
학교 수	3	18	35

<표 2-9> 가방 규제 내용(복수 처리)

	가격	색상	형태
학교 수	3	18	35
	가격	색상	형태
학교 수	3	18	35

<표 2-10> 가방 규제의 예

- 책가방은 실용적이고 사치스럽지 않은 학생용 가방을 사용하되 배낭 식으로 된 것으로 한다.
- 검은색, 짙은 남색 또는 진회색 계통의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 요란한 무늬, 글씨, 상표가 새겨진 것은 금한다.
- 가방의 크기는 최소한 교과서 5권과 사전 한 권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부착물 (배지, 열쇠고리, 인형 등)을 가방에 달지 않는다.
- 학생용 책가방만 허용한다. 그림이나 문자가 있거나 너무 요란한 색깔의 가방은 불허한다. (제외사항: 고가품, 핸드백류, Box가방, 단, Sack 종류는 가방의 밑면에 두꺼운 판이 있어야 함)
- 현란한 원색의 가방, 신사-숙녀용 가방 여행용 가방, 등산용 가방, 짹 등을 금한다. 성인용 가죽가방 및 파일 사용은 금한다.
- 다음의 가방은 사용할 수 없다. (가로로 메는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방 또는 변형된 가방을 사용하는 경우)
- 색상을 단순해야 하며, 지나치게 울긋불긋한 것은 금한다.
- 시중에서 판매하는 학생용 가방이나 색을 사용하되 영자가 크게 쓰인 것이나 고급외제품을 금함
- 특수 스포츠용 가방(한쪽 어깨에 매는 가방) 및 군용품 또는 군용품 모양으로 제조된 것 금지

표현의 자의성과 모호함,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세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가방'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5) 마무리

두발, 장신구, 신발, 가방 등에 관한 규정 전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규제 내용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규범으로서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용의복장 규정 전반에서 '학생다움'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학생다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전적으로 학교당국의 시각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구두를 신는 것이 학생답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하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다양한 색깔은 학생답지 못한 것이고, 검정색 계통만이 학생다운 것이다. '어른 스타일'이나 '성인용'은 안 되고 '학생용'을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에서 '성인다운 것'과 '학생다운 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경계는 없다. '사치성'과 '검소한 것'을 구분 짓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 규정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못된다.

결국 '학생다움'이라는 잣대는 학교 당국에게는 용의복장에 대한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이나 학생들에게는 무제한적인 규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학생다움'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자의성과 모호성으로 가득 차 있다. 앞서 살펴본 규정들에 대해 학생들이 지킬만한 근거와 가치가 있다고 느낄 요소가 얼마나 될까?

현재의 생활지도규정 전반이 갖고 있는 기준은 단별 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 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외형의 획일화에서 느끼는 학교 당국의 안도감이 '학생다움'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둘째, 절차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각종 조사에서 학생들은 두발 규제를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아왔다. 2000년 서명운동에서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에까지 이른 학생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자,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 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규정을 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 합리성을 획득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간 이루어진 많은 토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친 합리적 규정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규정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학교당국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

다.

셋째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용의복장 규정은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life style)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 교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최소한의 개성 실현조차 꿈꿀 수 없다.

학교는 머리 길이 또는 어떤 장신구가 다른 학생에 대한 안전, 수업 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왜 타당한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학생들로부터 도덕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욕적 언사', '강제적인 머리깍기', '소지품 검사와 속옷 검사' 등의 관행은 그 산물일 것이다.

이런 관행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자유(제17조)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제16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8조 2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29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7조)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단, 그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실현 방법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엄격한 규율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다. 학생들의 개성적인 옷차림과 머리모양,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용적인 시선과 수용적인 자세를 거세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용의 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목적이 학생들을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써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획일화하려는 의

도로 탈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머리모양과 복장 등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양식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4. 학생선도 규정

### 1) 징계시 선도위원회 심의여부

일반적으로 교감, 생활지도부장(각 부서 부장 등), 학년부장(해당 학년)으로 구성되는 선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정해놓은 학교는 조사 대상 47개 학교 가운데 45개이다. '징계'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선도처분)'의 5단계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방 단계에서부터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으며, 주로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부 교사 선에서 결정한다. 학교봉사부터 심의를 하는 학교 수는 15개, 사회봉사가 12개, 특별교육부터 심의하는 학교가 18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어느 선에서 할지를 정해놓지 않은 곳도 2개 학교이다.

<표 3-1> 징계시 선도위원회 심의 요건

	훈방부터	학교봉사 부터	사회봉사 부터	특별교육 부터	퇴학부터	명시 안됨
학교 수	0	15	12	18	0	2

### 2) 진술 기회 부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술 기회의 부여' 문제는 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해 법률 체계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로 정의된다. 즉,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정한 법과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제한 당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 절차의 개념은 법 집행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법 내용의 정당성까지를 포괄한

다.

<표 3-2>에서 '명시 안됨'에 해당하는 20개 학교의 경우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선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조사나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본인과 보호자의 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22개 학교 및 '부여할 수 있다'의 6개 학교의 경우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의 전에 위원회가 진술을 청취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하지 않다. 사전 진술과 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크게 다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정계 사유통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사전에 정계 사유통지가 되어 소명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표 3-2> 정계시 진술 기회 부여

	부여해야 한다	부여할 수 있다.	명시 안됨
학교 수	22	6	20

### 3) 마무리

우리 사회 구성원이 희망하는 바는 학생의 존엄성 상실 없이 학교에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강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규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개인들의 불규칙한 일탈 행동을 문제시하는 것과 규율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이다. 즉 규율이 가진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에 반대하는 것이지, 규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사들의 행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규율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고 스스로가 도덕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극대화에 복무할 수 있는 '정당한 법'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는 것이어야 한다.

규율은 학교 구성원의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학생들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능동

적인 책임을 지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존중'있는 대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에서의 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다. 현행 선도규정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8조 제2항)이 정한 의무에 충실히 방향으로 전면 재고돼야 할 것이다.

## 부산지역 학생 인권의식 (학생·학부모·교사) 조사분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관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 및 정책 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완전한 악명이므로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 위원 박영관 : (051)866-7587(교육위원회)/ 017-559-4229

홈페이지: [www.ykpark.pe.kr](http://www.ykpark.pe.kr) / e-mail: isimi5@hanmail.net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2.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3.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4.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5.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참관과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
- ② 참관만 허용한다.
- ③ 둘 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6. 특기·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 ②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 ③ 학생을 위해 그래야 한다.
- ④ 기타( )

7.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허용 불가
- ②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 ③ 전면 허용
- ④ 잘 모르겠다.

8.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어느 정도 심각하다.
- ③ 그리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9.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다.
- ② 너무 적다.
- ③ 적절하다.
- ④ 잘 모르겠다.

10.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연히 해야 한다.
- ②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

11.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문제 될 것이 없다.
- ② 다소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
- ③ 학생 동의 없이 실시해서는 안된다.
- ④ 해서는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

12.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
- ② 수업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한다.
- ③ 휴대는 허용하되, 교내 사용은 금지 한다.
- ④ 전면 휴대 금지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3.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 ② 익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 ③ 폐지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4.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5.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체적 구타(때리기)
  - ② 벌세우기 (꿇어 앉히기, 엎드려 앉히기)
  - ③ 폭언, 모욕적 발언
  - ④ 열악한 복지
  - ⑤ 성적에 따른 차별
  - ⑥ 학생 의사 무시(강제 자율학습)
  - ⑦ 학생 자치권에 대한 간섭
  - ⑧ 사생활 무시
  - ⑨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 ⑩ 과도한 청소
  - ⑪ 기타 ( )

※ 해당되는 사항에 하나만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A. 소속 학교

- ① 중학교  
 ② 일반계 고등학교  
 ③ 실업계 고등학교

### B. 성별

- ① 남  
② 여

### 설문 조사 결과(빈도 분석- 학생)

### 1. 학생응답분석결과

## 1. 솔속학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중학교	218	33.8	33.8	33.8
	일반고교	292	45.7	79.5	79.5
	실업고교	131	20.5	20.5	100.0
	합계	839	100.0		

## 2.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	353	55.2	55.2	55.2
	여	288	44.8	44.8	100.0
	합계	839	100.0	100.0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88	10.8	10.7	10.7
	그렇지 않다	277	43.5	34.5	54.2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292	45.8	45.8	100.0
	합계	63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39	100.0		

2.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71	11.1	11.1	11.1
	그렇지 않다	287	44.9	45.0	58.1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279	43.0	43.7	99.0
	무응답	1	0.2	0.2	100.0
	합계	639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2	
합계		639	100.0		

3.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142	22.2	22.3	22.3
	그렇지 않다	285	44.8	44.7	88.9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211	33.0	33.1	100.0
	합계	638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2	
합계		639	100.0		

4.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139	21.8	21.8	21.8
	그렇지 않다	341	53.4	53.5	75.4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157	24.8	24.8	100.0
	합계	63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39	100.0		

5.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참관과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	484	72.8	72.8	72.8
	참관만 허용한다 둘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23	3.8	3.8	78.5
	잘 모르겠다	18	2.8	2.8	79.3
	기타	128	19.7	19.8	99.1
	합계	63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39	100.0		

6. 특기 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421	65.9	66.1	66.1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139	21.8	21.8	87.9
	학생을 위해 그래야 한다	56	8.8	8.8	96.7
	기타	21	3.3	3.3	100.0
	합계	63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39	100.0		

7.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허용불가	148	23.2	23.2	23.2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399	62.4	62.4	85.6
	전면 허용	31	4.9	4.9	90.5
	잘모르겠다	61	9.5	9.5	100.0
	합계	639	100.0	100.0	
결측	0	0	0		
	합계	639	100.0		

8.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98	15.3	15.3	15.3
	어느정도 심각하다	170	26.6	26.6	41.9
	그리 심각하지 않다	291	45.5	45.5	87.5
	전혀 심각하지 않다	34.	5.3	5.3.	92.8
	잘모르겠다	48	7.2	7.2	100.0
	합계	639	100.0	100.0	

9.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너무 많다	183	28.6	28.7	28.7
	너무 적다	25	3.9	3.9	32.6
	적절하다	341	53.4	53.4	86.1
	잘모르겠다	89	13.9	13.9	100.0
	합계	638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2		
	합계	639	100.0		

10.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당연히 해야 한다	75	11.7	11.7	11.7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86	60.4	60.4	72.1
	잘 모르겠다	160	25.0	25.0	97.2
	기타	18	2.8	2.8	100.0
	합계	639	100.0	100.0	
결측	0	0	0		
	합계	639	100.0		

11.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문제 될 것이 없다	98	15.3	15.3	15.3
	다소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	147	23.0	23.0	38.3
	학생 동의 없이 실시해서는 안된다	293	45.9	45.9	84.2
	해서는 안된다	62	9.7	9.7.	93.9
	잘 모르겠다	39	6.1	6.1	100.0
	합계	639	100.0	100.0	

12.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학생 자율에 맡김	242	37.9	37.9	37.9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355	55.6	55.6	93.4
	휴대는 허용, 교내 사용 금지	20	3.1	3.1	96.6
	전면 휴대 금지	9	1.4	1.4.	98.0
	잘 모르겠다	13	2.0	2.0	100.0
	합계	639	100.0	100.0	

13.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실명제 운영	240	37.6	37.6	37.9
	익명제 운영	271	42.4	42.4	93.4
	폐지해야 한다	28	4.1	4.1	96.6
	잘 모르겠다	102	18.0	18.0	100.0
	합계	639	100.0	100.0	
결측	0	0	0		
	합계	639	100.0		

14.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10	1.6	1.6	1.6
	대체로 그렇다	152	23.8	23.9	25.4
	대체로 그렇지 않다	241	37.7	37.8	63.3
	전혀 그렇지 않다	160	25.0	25.1	88.4
	잘 모르겠다	74	11.6	11.6	100.0
	합계	63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39	100.0		

15.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번 째 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신체적 구타(때리기)	122	19.1	19.2	19.2
	별세우기	77	12.1	12.1	31.4
	폭언, 모욕적 발언	182	28.5	28.7	60.1
	열악한 복지	27	4.2	4.3	64.4
	성적에 따른 차별	76	11.9	12.0	76.3
	학생 의사 무시	103	16.1	16.2	92.6
	학생 자치권 간섭	15	2.3	2.4	95.0
	사생활 무시	7	1.1	1.1	96.1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11	1.7	1.7	97.8
	과도한 청소	4	0.6	0.6	98.4
	기타	10	1.6	1.6	100.0
	합계	634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0.8		
	합계	639	100.0		

(두번 째 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신체적 구타(때리기)	1	0.2	0.2	0.2
	별세우기	19	3.0	3.3	3.5
	폭언, 모욕적 발언	53	8.3	9.2	12.7
	열악한 복지	9	1.4	1.6	14.3
	성적에 따른 차별	82	12.8	14.3	28.6
	학생 의사 무시	158	24.7	27.6	56.2
	학생 자치권 간섭	43	6.7	7.5	63.7
	사생활 무시	67	10.5	11.7	75.4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90	14.1	15.7	91.1
	과도한 청소	20	3.1	3.5	94.6
	기타	31	4.9	5.4	100.0
	합계	573	8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6	10.3		
	합계	639	100.0		

## 학생 인권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 학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관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 및 정책 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완전한 익명으로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박영관 : (051)866-7587(교육위원회)/ 017-559-4229

홈페이지: [www.ykpark.pe.kr](http://www.ykpark.pe.kr) / e-mail: isimi5@hanmail.net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2.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3.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4. 특기·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 ②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 ③ 학생을 위해 그래야 한다.
- ④ 기타( )

5.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참관과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
- ② 참관만 허용한다.
- ③ 둘 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7.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허용 불가
- ②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 ③ 전면 허용
- ④ 잘 모르겠다.

8.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어느 정도 심각하다.
- ③ 그리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9.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다.
- ② 너무 적다.
- ③ 적절하다.
- ④ 잘 모르겠다.

**10.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연히 해야 한다.
- ②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 )

**11.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문제 될 것이 없다.
- ② 다소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
- ③ 학생 동의 없이 실시해서는 안된다.
- ④ 해서는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

**12.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자유에 맡겨야 한다.
- ② 수업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한다.
- ③ 휴대는 허용하되, 교내사용은 금지 한다.
- ④ 전면 휴대 금지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3.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 ② 익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4. 교사,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기구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교육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시교육청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5.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교육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6.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7.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8.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 둘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체적 구타(때리기)
- ② 별세우기 (꿇어 앓히기, 엎드려 뺏쳐)
- ③ 폭언, 모욕적 발언
- ④ 열악한 복지
- ⑤ 성적에 따른 차별
- ⑥ 학생 의사 무시(강제 자율학습 등)
- ⑦ 학생 자치권에 대한 간섭
- ⑧ 사생활 무시
- ⑨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 ⑩ 과도한 청소
- ⑪ 기타 ( )

\* 해당되는 사항에 하나만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자녀의 학교(둘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이)

- ① 중학교
- ② 일반계 고등학교
- ③ 실업계 고등학교

B. 자녀의 성별

- ① 남
- ② 여

C. 응답하신 분의 성별

- ① 남
- ② 여

D. 응답하신 분의 연령

- ① 20-30대
- ② 40대
- ③ 50대
- ④ 60세 이상

설문 조사 결과 분석표(빈도분석- 학부모)

1. 자녀의 학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중학교	78	23.2	23.4	23.4
	일반고교	200	59.5	59.9	83.2
	실업고교	56	16.7	16.8	100.0
	합계	334	99.4	100.0	
결측	시스템	2	0.6		
	결측값				
	합계	336	100.0		

2. 자녀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	185	55.1	55.1	55.1
	여	151	44.9	44.9	100.0
	합계	336	100.0	100.0	

3. 부모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	79	23.5	23.5	23.5
	여	257	76.5	76.5	100.0
	합계	336	100.0	100.0	

4. 부모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20-30대	29	8.6	8.6
	40대	281	83.6	83.6
	50대	24	7.1	7.1
	60세 이상	2	0.6	0.6
	합계	336	100.0	100.0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56	16.7	16.7
	그렇지 않다	98	29.2	29.2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182	54.2	54.2
	합계	336	100.0	100.0

2.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74	22.0	22.0
	그렇지 않다	104	31.0	31.0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158	47.0	47.0
	합계	336	100.0	100.0

3.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114	33.9	33.9
	그렇지 않다	98	29.2	29.2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124	36.9	36.9
	합계	336	100.0	100.0

4. 특기 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144	42.9	42.9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111	33.0	33.0
	학생을 위해 그래야 한다	70	20.8	20.8
	기타	11	3.3	3.3
	합계	336	100.0	100.0

5.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99	29.3	29.5
	그렇지 않다	158	47.0	47.0
	그저 그렇다(잘 모르겠다)	78	23.2	23.2
	기타	1	0.3	0.3
	합계	336	100.0	100.0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참관과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	259	77.1	77.1
	참관만 허용한다	20	6.0	83.1
	둘 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3.0	86.1
	잘 모르겠다	47	14.0	100.0
	기타	0	0.0	0.0
	합계	336	99.4	100.0

7.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허용불가	53	15.8	15.8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250	74.4	74.4
	전면 허용	16	4.8	4.8
	잘 모르겠다	17	5.1	5.1
	합계	336	100.0	100.0

8.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27	8.0	8.1
	어느 정도 심각하다	92	27.4	27.5
	그리 심각하지 않다	147	43.8	43.9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	6.0	6.0
	잘 모르겠다	49	14.6	14.6
	합계	335	99.7	100.0
결측	0	1	0.3	
	합계	336	100.0	

9.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너무 많다	47	14.0	14.0
	너무 적다	16	4.8	4.8
	적절하다	181	53.9	53.9
	잘 모르겠다	92	27.4	27.4
	합계	336	100.0	100.0

10.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당연히 해야 한다	108	32.1	32.1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59	47.3	47.3
	잘 모르겠다	62	18.5	18.5
	기타	70	2.1	2.1
	합계	336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6	
	합계	336	100.0	

11.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문제 될 것이 없다	75	22.3	22.3
	다소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	134	39.9	39.9
	학생 동의 없이 실시해서는 안된다	100	29.8	29.8
	해서는 안 된다	17	5.1	5.1
	잘 모르겠다	10	3.0	3.0
	합계	336	100.0	100.0

12.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학생 자율에 맡김	50	14.9	14.9	14.9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171	50.9	50.9	65.8
	휴대는 허용, 교내 사용 금지	81	24.1	24.1	89.9
	전면 휴대 금지	26	7.7	7.7	97.6
	잘 모르겠다	8	2.4	2.4	100.0
	합계	336	100.0	100.0	

13.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설명제 운영	126	37.5	37.5	37.5
	의명제 운영	143	42.6	42.6	80.1
	잘 모르겠다	67	19.9	19.9	100.0
	합계	336	100.0	100.0	

14. 교사,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기구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학교내 설치	121	36.0	36.1	36.1
	시교육청 설치	36	10.7	10.7	46.9
	학교와 시교육청 모두 설치	138	41.1	41.2	88.1
	필요 없다고 생각	83	2.4	2.4	90.4
	잘 모르겠다	32	9.5	9.6	100.0
	합계	335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3		
	합계	336	100.0		

15.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교육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필요하다	103	30.7	30.7	30.7
	필요하다	185	55.1	55.1	85.7
	필요하지 않다	16	4.8	4.8	90.5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1.5	1.5	92.0
	잘 모르겠다	27	8.0	8.0	100.0
	합계	336	100.0	100.0	

16.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8	2.4	2.4	2.4
	대체로 그렇다	116	34.5	34.5	36.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6	37.5	37.5	74.4
	전혀 그렇지 않다	31	9.2	9.2	83.6
	잘 모르겠다	55	16.4	16.4	100.0
	합계	336	100.0	100.0	

17.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85	25.3	25.4	25.4
	대체로 그렇다	197	58.6	59.0	84.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	5.7	5.75	90.1
	전혀 그렇지 않다	7	2.1	2.1	92.2
	잘 모르겠다	26	7.7	7.8	100.0
	합계	334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6		
	합계	336	100.0		

18.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신체적 구타(때리기)	110	32.7	33.0
	벌세우기	24	7.1	7.2
	폭언, 모욕적 발언	99	29.5	29.7
	열악한 복지	23	6.8	6.9
	성적에 따른 차별	45	13.4	13.5
	학생 의사 무시	24	7.1	7.2
	학생 자치권 간섭	5	1.5	1.5
	사생활 무시	1	0.3	0.3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2	0.6	0.6
	과도한 청소	0	0.0	0.0
	기타	0	0.0	0.0
	합계	333	94.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9	
	합계	336	100.0	

(두번째 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신체적 구타(때리기)	0.0	0.0	0.0
	벌세우기	11	3.3	3.4
	폭언, 모욕적 발언	72	21.4	22.2
	열악한 복지	13	3.9	4.0
	성적에 따른 차별	68	20.2	20.9
	학생 의사 무시	77	22.9	23.7
	학생 자치권 간섭	15	4.5	4.6
	사생활 무시	36	10.7	11.1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27	8.0	8.3
	과도한 청소	4	1.2	1.2
	기타	2	0.6	0.6
	합계	325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3.3	
	합계	336	100.0	

## 학생 인권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 중·고등학교 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관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 및 정책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완전한 익명이므로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박영관 : (051)866-7587(교육위원회)/ 017-559-4229

홈페이지: [www.ykpark.pe.kr](http://www.ykpark.pe.kr) / e-mail: [isimi5@hanmail.net](mailto:isimi5@hanmail.net)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잘 모르겠다.

2. [학생회실]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학생회실]이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3. 학생회의 회의 소집이나 의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학생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② 학생회와 생활지도부(혹은 담당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학생회의 의견을 참조하되, 생활지도부에서 주로 결정한다.

- ④ 생활지도부에서 결정하여 통고한다.  
 ⑤ 기타( )

4.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5.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회 간부 수련회가 학생 자치 활동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6.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8. 특기·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②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③ 학생을 위해 옳다.

- ④ 기타( )

9.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참관과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  
 ② 참관만 허용한다.  
 ③ 둘 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10. 학생 생활 관련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11.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허용 불가  
 ②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③ 전면 허용  
 ④ 잘 모르겠다.

12.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어느 정도 심각하다.  
 ③ 그리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3.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다.  
 ② 너무 적다.

- ③ 적절하다.  
 ④ 잘 모르겠다.

14.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연히 해야 한다.  
 ②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15.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문제 될 것이 없다.  
 ② 다소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  
 ③ 학생 동의 없이 실시해서는 안된다.  
 ④ 해서는 안 된다.  
 ⑤ 잘 모르겠다.

16.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② 수업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한다.  
 ③ 휴대는 허용하되, 교내 사용은 금지한다.  
 ④ 전면 휴대 금지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17.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익명제로 운영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8. 학생의 징계 시 규정과 절차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1) 징계 위원회 등 심의기구 구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2) 학생에게 징계 심의기구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3)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4)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5) 제반 절차에 대해 학생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해 준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6) 학교 징계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19. 교사,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기구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교육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시교육청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20.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교육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1.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2.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체적 구타(때리기)  
 ② 벌세우기 (꿇어 앉히기, 옆드려 뺏쳐)  
 ③ 폭언, 모욕적 발언  
 ④ 열악한 복지  
 ⑤ 성적에 따른 차별  
 ⑥ 학생 의사 무시(강제 자율학습 등)  
 ⑦ 학생 자치권에 대한 간섭  
 ⑧ 사생활 무시  
 ⑨ 횡단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⑩ 과도한 청소  
 ⑪ 기타 ( )

23.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4. 과거 교사 양성과정(대학)이나 임용 후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대학에서는 있었다.

- ② 임용후에는 있었다.  
 ③ 대학과 임용후에 다 있었다.  
 ④ 전혀 없다.

※ 해당되는 사항에 하나만 “v”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소속 학교

- ① 중학교  
 ② 일반계 고등학교  
 ③ 실업계 고등학교

B. 성별

- ① 남       ② 여

C. 연령

- ① 20-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세 이상

##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빈도분석- 교사)

### 1) 조사대상 분포표

소속학교 \* 성별 교차표

		성별		전체
		1 남	2 여	
소속학 교	1 중학교	빈도	30	50
		소속학교의 %	37.5%	62.5%
	2 일반고	빈도	35	51
		소속학교의 %	40.7%	59.3%
전체	3 실업고	빈도	20	29
		소속학교의 %	40.8%	59.2%
		빈도	85	130
		소속학교의 %	39.5%	60.5%
				100.0%

연령 \* 성별 교차표

		성별		전체
		1 남	2 여	
연령	1 20-30대	빈도	15	73
		연령의 %	17.0%	83.0%
	2 40대	빈도	54	53
		연령의 %	50.5%	49.5%
전체	3 50대	빈도	16	4
		연령의 %	80.0%	20.0%
		빈도	85	130
		연령의 %	39.5%	60.5%
				100.0%

### 2) 전체대상 문항별 응답 분포표

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학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 효	그렇다	49	22.8	22.8	22.8
	그렇지 않다	75	34.9	34.9	57.7
	그저 그렇다	77	35.8	35.8	93.5
	잘 모르겠다	14	6.5	6.5	100.0
	합계	215	100.0	100.0	

2. [학생회실]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 효	그렇다	37	17.2	17.2	17.2
	거령지 않다	44	20.5	20.5	37.7
	그저 그렇다	59	27.4	27.4	65.1
	[학생회실이 없다]	55	25.6	25.6	90.7
	잘 모르겠다	20	9.3	9.3	100.0
	합계	215	100.0	100.0	

3. 학생회의 회의 소집이나 의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 효	학생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	11	5.1	5.1	5.1
	학생회와 생활지도부 협의 결정	97	45.1	45.1	50.2
	학생의 의견을 참조해 생활지도부 결정	60	27.9	27.9	78.1
	생활지도부에서 결정하여 통고	34	15.8	15.8	94.0
	기타	13	6.0	6.0	100.0
	합계	215	100.0	100.0	

4. 학생회의 결정 등 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66	30.7	30.7
	그렇지 않다	35	16.3	47.0
	그저 그렇다	103	47.9	94.9
	잘 모르겠다	11	5.1	100.0
	합계	215	100.0	100.0

5.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회 간부 수련회가 학생 자치 활동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37	17.2	17.2
	그렇지 않다	56	26.0	43.3
	그저 그렇다	89	41.4	84.7
	잘 모르겠다	33	15.3	100.0
	합계	215	100.0	100.0

6. 학생 축제인 [학예제]가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40	18.6	18.6
	그렇지 않다	89	41.4	60.0
	그저 그렇다	80	37.2	97.2
	잘 모르겠다	6	2.8	100.0
	합계	215	100.0	100.0

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25	11.6	11.6
	그렇지 않다	94	43.7	55.3
	그저 그렇다	82	38.1	93.5
	잘 모르겠다	14	6.5	100.0
	합계	215	100.0	100.0

8. 특기·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반강제로 실시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부당하므로 시정	104	48.4	48.4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	86	40.0	40.0
	학생을 위해 옳다	9	4.2	4.2
	기타	16	7.4	7.4
	합계	215	100.0	100.0

9.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참관과 발언 허용	114	53.0	53.0
	참관만 허용	31	14.4	14.4
	둘다 허용하지 말아야	20	9.3	9.3
	잘 모르겠다	43	20.0	20.0
	기타	7	3.3	3.3
합계		215	100.0	100.0

10. 학생 생활 관련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38	17.7	17.7
	그렇지 않다	84	39.1	39.1
	그저 그렇다	79	36.7	36.7
	잘 모르겠다	14	6.5	6.5
	합계	215	100.0	100.0

11.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허용 불가	14	6.5	6.5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허용	168	78.1	78.1
	전면 허용	21	9.8	9.8
	잘 모르겠다	12	5.6	5.6
	합계	215	100.0	100.0

12.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	1	.5	.5
	어느 정도 심각	27	12.6	12.6
	그리 심각하지 않다	142	66.0	66.0
	전혀 심각하지 않다	41	19.1	19.1
	잘 모르겠다	4	1.9	1.9
합계		215	100.0	100.0

13.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	50	23.3	23.3
	어느 정도 심각	17	7.9	7.9
	그리 심각하지 않다	138	64.2	64.2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	4.7	4.7
	합계	215	100.0	100.0

14. 교무실, 교직원 전용 화장실, 행정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당연히 해야 한다	47	21.9	21.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5	58.1	58.1
	잘 모르겠다	29	13.5	13.5
	기타	14	6.5	6.5
	합계	215	100.0	100.0

15.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문제될 것 없다	8	3.7	3.7
	다소 문제지만 불가피	136	63.3	63.3
	학생동의 없이 실시해선 안됨	53	24.7	24.7
	해서는 안 된다	12	5.6	5.6
	잘 모르겠다	6	2.8	2.8
합계		215	100.0	100.0

16.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학생 자율에 맡긴다	11	5.1	5.1
	학사일정에 지장없는 범위 허용	122	56.7	56.7
	휴대는 허용, 교내 사용 금지	69	32.1	32.1
	전면 휴대 금지	12	5.6	5.6
	잘 모르게겠다	1	.5	.5
합계		215	100.0	100.0

17.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설명제 운영	153	71.2	71.2
	익명제 운영	40	18.6	18.6
	잘 모르겠다	22	10.2	10.2
	합계	215	100.0	100.0

18. 학생의 징계 시 규정과 절차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1) 징계위원회 등 심의기구 구성이 공정화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14	53.0	53.0
	아니오	28	13.0	13.0
	잘 모르겠다	73	34.0	34.0
	합계	215	100.0	100.0

2) 학생에게 징계 심의기구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46	21.4	21.4
	아니오	101	47.0	47.0
	잘 모르겠다	68	31.6	31.6
	합계	215	100.0	100.0

3)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24	11.2	11.2
	아니오	95	44.2	44.2
	잘 모르겠다	96	44.7	44.7
	합계	215	100.0	100.0

4)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41	65.6	65.6
	아니오	17	7.9	7.9
	잘 모르겠다	57	26.5	26.5
	합계	215	100.0	100.0

5) 제반 절차에 대해 학생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해 준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20	55.8	55.8
	아니오	32	14.9	14.9
	잘 모르겠다	63	29.3	29.3
	합계	215	100.0	100.0

6) 학교 징계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잘 알고 있다	28	13.0	13.0
	대체로 알고 있다	95	44.2	44.2
	보통이다	38	17.7	17.7
	잘 모른다	54	25.1	25.1
	합계	215	100.0	100.0

19. 교사,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기구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학교내에 설치	31	14.4	14.4
	시교육청에 설치	100	46.5	46.5
	학교와 시교육청 모두 설치	39	18.1	18.1
	필요없다	15	7.0	7.0
	잘 모르겠다	30	14.0	14.0
	합계	215	100.0	100.0

20.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교육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필요	46	21.4	21.4
	필요	130	60.5	60.5
	필요없다	18	8.4	8.4
	전혀 필요 없다	2	.9	.9
	잘 모르겠다	19	8.8	8.8
	합계	215	100.0	100.0

21.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9	4.2	4.2
	대체로 그렇다	131	60.9	6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56	26.0	26.0
	전혀 그렇지 않다	8	3.7	3.7
	잘 모르겠다	11	5.1	5.1
	합계	215	100.0	100.0

22-1.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신체적 구타(때리기)	35	16.3	17.9
	벌 세우기(꿇어 앉히기, 엎드려 뺏쳐)	37	17.2	36.7
	폭언, 모욕적 발언	46	21.4	60.2
	열악한 복지	44	20.5	82.7
	성적에 따른 차별	2	.9	83.7
	학생 의사 무시(강제 자율학습 등)	25	11.6	96.4
	학생 자치권에 대한 간섭	5	2.3	99.0
	사생활 무시	1	.5	99.5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1	.5	100.0
	합계	196	91.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8.8	
	합계	215	100.0	

2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벌세우기(꿇어 앉히기, 엎드려 뺏쳐)	8	3.7	4.1
	폭언, 모욕적 발언	24	11.2	12.2
	열악한 복지	19	8.8	9.7
	성적에 따른 차별	7	3.3	3.6
	학생의사 무시(강제 자율학습 등)	53	24.7	27.0
	학생 자치권에 대한 간섭	13	6.0	6.6
	사생활 무시	11	5.1	5.6
	획일적 등교지도, 생활지도	35	16.3	17.9
	과도한 청소	7	3.3	3.6
	기타	19	8.8	9.7
결측	합계	196	91.2	100.0
	시스템 결측값	19	8.8	
	합계	215	100.0	

Group \$A22 (22\_1번과 22\_2번을 합한 분포)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35	8.9	17.9
	2	45	11.5	23.0
	3	70	17.9	35.7
	4	63	16.1	32.1
	5	9	2.3	4.6
	6	78	19.9	39.8
	7	18	4.6	9.2
	8	11	2.8	5.6
	9	36	9.2	18.4
	10	8	2.0	4.1
	11	19	4.8	9.7
Total responses		392	100.0	200.0

19 missing cases: 196 valid cases